PART 1
법령을 공부하기에 앞서

CHAPTER 1 법령을 만드는 과정
CHAPTER 2 법조문의 형식
CHAPTER 3 법률용어와 친해지기

선생님의 비법전수

법 과목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PART 1에서 법의 제정 과정부터 법조문의 형식 등을 공부하며 법 과목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CHAPTER 1
법령을 만드는 과정

CHAPTER 2
법조문의 형식

CHAPTER 3
법률용어와 친해지기

CHAPTER 1

법령을 만드는 과정

용어 & 참고

01 법률(法律)

보통 우리가 말하는 '법'은 '법률'을 가리킨다. 법률은 헌법에 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며 행정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의 의회입법주의에서 법 체계상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법률의 제정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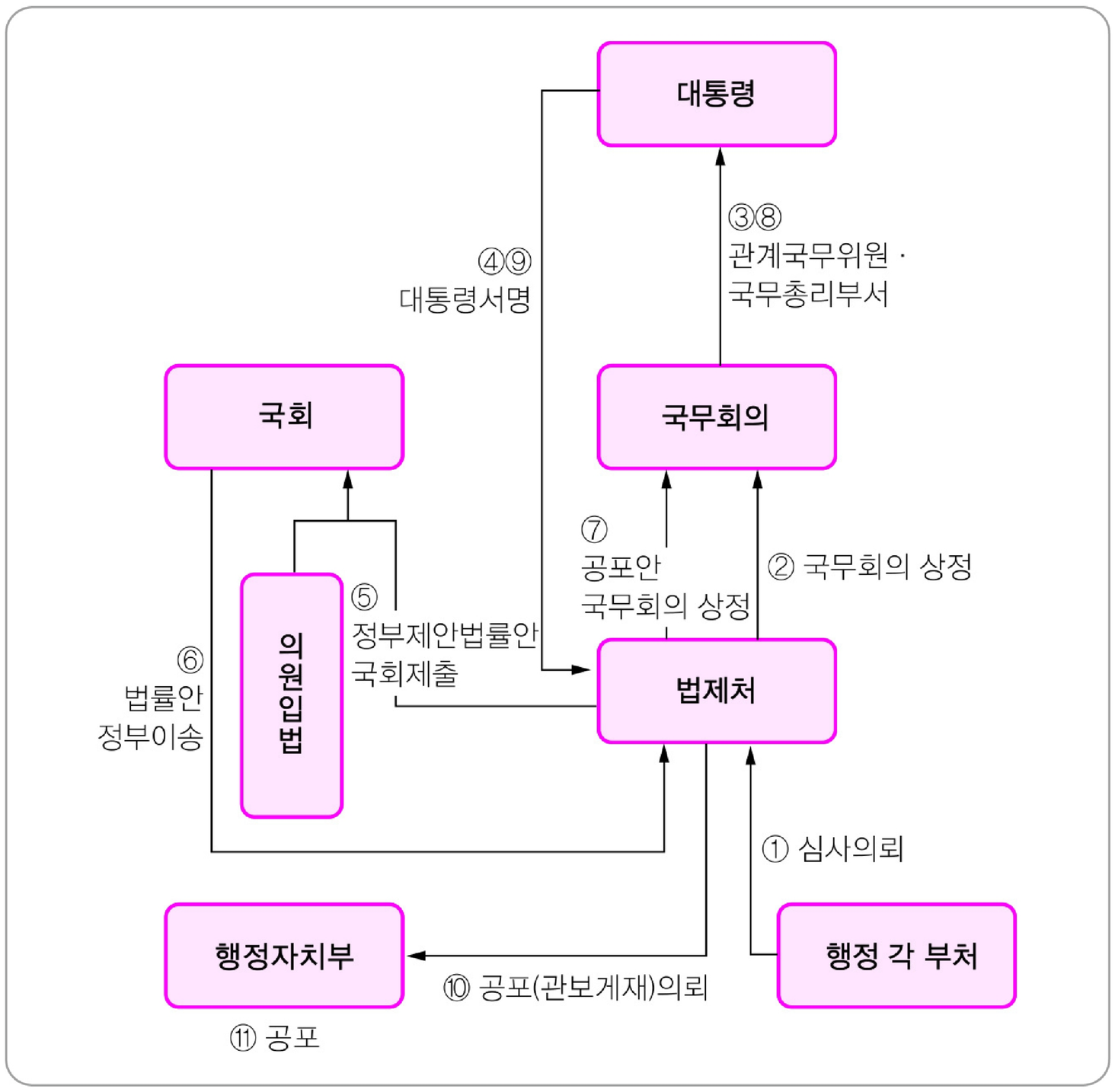

보충 법률의 명칭

Q. 법률을 표기함에 있어서 '~법'과 '~법률'이 있는데, 이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걸까요? 예를 들면 「민법」, 「부동산등기법」, 「공인중개사법」 등은 '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은 '법률'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A. 일반적으로 '법률'의 경우에 제명을 붙이는 형식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법', '~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특례(특별, 특별조치, 임시조치)법', '~를 위한 특례(특별, 특별조치, 임시조치)법'인바, 이 중에서 '~법'과 '~에 관한 법률'이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명을 붙일 때 이 중 어떤 것을 택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명은 해당 법령의 내용을 요약하여 간결하게 붙여야 부르기 쉽기 때문에 '~법'으로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명이 다소 길어 '~법'으로 하는 경우 딱딱한 느낌이 들거나 제명 중에 '~를, ~하는, ~위한, ~의, ~관한'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법률'을 붙이고 있습니다. ⇨ 법제처 답변내용

02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1) 오늘날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의회입법주의 원칙상 국민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범은 국회가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은 복잡다기한 사회적 현상을 모두 포괄하기가 어려워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성문법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어려워 시대적 상황의 변화를 잘 반영하기가 어렵다.

(2) 따라서 법률의 의미를 살리면서도 추상적 법률의 의미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 집행과정에서 일관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법률 제정권자인 국회는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행정부의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장관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임을 받은 범위 안에서 만들어진 규범들이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이다.

용어 & 참고

[1]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합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라고 하며, 이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과목의 정식 명칭이다.

용어 & 참고

0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이 '조례'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범이 '규칙'이다.

(2) 조례와 규칙은 자치단체규범이라고 하는데, 그 효력범위가 자치단체가 속한 지역에 한정된다는 점이 다른 법령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조례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와 행정수수료 등을 정하고 있다.

핵심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조직 · 권한 등의 일반성 또는 특수성에 따라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1. **보통지방자치단체**

   보통지방자치단체는 그 목적 · 조직 · 권한 등에 있어 일반적 성격을 가지고, 전국적 ·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보통지방자치단체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 · 군 · 자치구가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서로 대등한 공법인이고 상하복종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2.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그 구성방식 또는 처리사무가 특수한 성격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현행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규약을 정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하는 독립법인이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관할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③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CHAPTER 2

법조문의 형식

용어 & 참고

01 조(條) · 항(項) · 호(號)

'조'는 법률을 구성하는 원칙적 단위이다. '항'은 어떤 사항을 규율함에 있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하기 어렵거나 경우를 나누어 규정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때에 사용하는 입법형식이다. 실제 법조문을 보자.

「**공인중개사법**」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에서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로 표시된 것이 표제명이고, 원문자 '① · ②'로 표시된 것이 '항'이다. 그러므로 「공인중개사법」 제7조 제1항의 규범내용은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되는 것이다.

'호'는 일정한 사항을 열거하는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 사용하는 입법형식이다. 역시 실제 법조문을 보자.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 교환 ·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위에서 숫자 '1 · 2'로 표시된 것이 '호'에 해당한다.

02 본문(本文) · 단서(但書)

하나의 조문에서 일정한 사항을 규율하고, 이어서 반대의 경우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는 입법형식이다. 실제 법조문을 보자.

「**공인중개사법**」
제50조【양벌규정】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 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공인중개사법」 제50조에서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 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본문'에 해당하고, "다만,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부분은 '단서'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제50조의 단서라 함은 "다만,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가리키는 것이다.

03 제1문(第1文) · 제2문(第2文)

하나의 조문이 2개 이상의 문장으로 되어 있으나 이들 문장이 본문과 단서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각 규범내용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실제 법조문을 보자.

「공인중개사법」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위의 「공인중개사법」 제21조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제1문'이고,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는 '제2문'이다.

04 제O조(條)의2

어떤 법률을 개정하면서 전에 없던 조문을 신설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 만일 신설하는 조문의 번호를 일렬적으로 쓰게 되면 그 뒤의 조문번호가 모두 밀리게 되어 법률을 적용하는 실무가나 공부하는 사람 등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기술에 해당한다. 실제 법조문을 보자.

「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간판의 철거】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1. 제20조 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2. 제21조 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3. 제3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간판의 철거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6.4.〉

제21조의2는 「공인중개사법」이 제정(2005.7.29)될 때에는 없었던 조문이나, 2013년 6월 4일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이다. 만일 이 조문의 번호를 제22조로 하였다면 개정 전의 제22조 이하의 규정은 모두 번호가 변경되었을 것이다.

05 부칙(附則)

부칙이란 어떠한 규칙을 보충하기 위하여 덧붙인 것을 말하는데 법률이나 명령의 본칙 끝에 붙여서 경과규정, 시행기일, 구법의 폐지, 세칙을 정하는 법 따위를 정하는 것이다. 실제 부칙을 보자.

부칙 〈법률 제12635호, 2014.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제재처분의 속행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1조 제2항 제1호의2의 개정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위 부칙을 보면 법률 제12635호는 2014년 5월 21일에 공포되었으나,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또한 법률 제40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2014.7.29) 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하게 되며, 이 법 시행 당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1조 제2항 제1호의2의 개정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다.

CHAPTER 3

법률용어와 친해지기

용어 & 참고

01 가운뎃점(·)

가운뎃점은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데, 가운뎃점이 사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단어를 열거할 때에는 가운뎃점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같은 경우에 사용한다.

②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날을 나타내는 숫자에는 가운뎃점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3 · 1 운동, 6 · 25 전쟁'과 같은 경우에 사용한다.

③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는 '및'이나 '또는'으로 연결하지 아니하고 가운뎃점을 써서 연결한다. 예를 들어 '지도 · 감독, 서명 · 날인, 조사 · 심의, 위법 · 부당, 유지 · 관리'와 같은 경우에 사용한다.

④ 업무상의 선후관계 등 연관성을 가지는 단어는 '및'이나 '또는'으로 연결하지 아니하고 가운뎃점을 써서 연결한다. 예를 들어 '조사 · 확인, 확인 · 설명, 설치 · 운영, 수립 · 시행, 수집 · 분석, 지정 · 공고, 부과 · 징수'와 같은 경우에 사용한다.

02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문 중 일부 부분을 소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을 뿐이며, 본문 중 다른 부분은 이를 적용받음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 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은 원칙적으로는 벌금형을 부과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03 내지(乃至)

일반적으로 '내지'라는 단어는 '또는'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법률용어인 '내지'는 '~에서 ~까지'를 뜻한다. 예컨대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라는 규정은 "제1항 제1호에서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04 반점(,)

하나의 어구가 띄어쓰여 있을 때에는 반점을 사용하는데, 반점이 사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어구를 연결할 때 반점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결과의 확인 및 최종성과의 종합'과 같은 경우에 사용한다.

② 대등하거나 종속적인 절이 이어질 때 반점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휴업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휴업신청의 연장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와 같이 사용한다.

05 본다[= 의제(擬制) · 간주(看做)] · 추정(推定)

(1) '간주'와 '추정'

법률용어 중에 '간주'[1]와 '추정'이라는 개념이 있다. 두 개념 모두 어떤 결론을 정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다. '추정'은 사안에 대하여 어떤 결론을 내리되 그 결론에 반대되는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면 그 결론을 수정한다. 이에 비하여 '본다'는 결론에 반대되는 그 어떤 증거가 나와도 애초의 결론을 수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시험을 볼 때 감독관이 수험생들에게 시험도중 고개를 드는 행위는 컨닝으로 '추정'하겠다고 했을 때, 어떤 수험생이 고개를 든다면 감독관은 그를 컨닝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수험생이 자신은 컨닝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처벌을 취소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감독관이 고개 드는 행위를 컨닝으로 '본다'라고 하면 고개를 드는 행위는 무조건 컨닝으로 취급되어 차후에 그 어떤 증거를 제시하여도 컨닝의 결정은 번복이 되지 않는다.

(2) 사용례

이와 같은 '본다'와 '추정한다'의 입법례는 여러 법령에서 볼 수 있다.

「민법」상의 '간주'와 '추정'의 입법례

제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이상과 같이 법문상에서는 '본다'와 '추정한다'를 의식하고 분간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다른 의미를 가진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위 규정에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성년자로 본다고 하는 것은 사법관계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청소년 보호법」 등의 공법[2]상의 관계에서는 제아무리 혼인을 하였다고 하여도 만 19세 미만의 자는 여전히 미성년자로서 취급되는 것이다.

1 간주

종래 법문에서는 '간주'에 해당하는 경우를 '간주한다'는 말로 표현해 왔으나, 현재에는 '본다'는 말로 규정하고 있다. 이후 '간주'는 '본다'로 바꾸어 쓰기로 한다.

2 공법(公法)

공법이란 국가와 지방공공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와 개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총칭한다(예 「헌법」, 행정법, 「형법」 및 소송법 등). 이는 개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예 「민법」, 「상법」 등)과 대응한다.

06 시(時) · 때 · 경우(境遇)

(1) '시(時)'와 '때'

법령에서 '시(時)'라는 한자나 '때'가 쓰이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1] 이것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양자의 의미가 전혀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두 용어는 명확히 구별하여야 한다.

① **시(時)**: 한자인 '시(時)'는 어떤 시기나 시각을 특히 강조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예를 들어 「민법」 제1113조 제1항의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는 규정이 그 용례이다.

② **때**: '때'는 반드시 어떤 시점을 한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널리 '경우'라고 하는 용어와 같은 의미이며, 가정적 조건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그 용례이다.

(2) '때'와 '경우'

그렇다면 '때'와 '경우'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때'와 '경우'는 다같이 가정적 조건을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이다. 그리고 이 가정적 조건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경우'를 사용하기도 하고 '때'를 사용하기도 한다. 어느 것을 사용하는가는 그때그때의 어감으로 결정하는 일이 많다. 다만, 가정적 조건이 두 개 겹치는 경우에는 '경우'와 '때'를 구별하여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큰 조건에는 '경우'를 사용하고, 작은 조건에는 '때'를 사용하여 반복서술을 막는 것이 원칙적인 기준이다. 결론적으로 가정적 조건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때' 또는 '경우'를 사용하고, '시(時)'는 사용하지 않는다. '시(時)'는 문자 그대로 시점이나 시기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만 사용된다.

용어 & 참고

[1] 법문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한자를 쓰지 않고 한글로 표기한 것일 수도 있고, 법령의 한글화에 의하여 '때'라고 표기한 것일 수도 있다.

07 월(月)

법률의 많은 규정에 기간의 단위인 '월(月)'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그 용례이다. 여기에서 월(月)은 '개월'을 의미한다. 즉, 단순히 날수를 계산하여 180일이 6개월이 되는 것이 아니고 1월이 28일 · 29일 · 30일 · 31일로 구성되기 때문에 6개월이라 하면 최소 181일~최대 184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08 이상(以上) · 이하(以下)

'이상'과 '이하'는 기준점을 포함하여 그보다 많거나 적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만원 이상이면 1만원도 포함하고, 2천원 이하이면 2천원도 포함한다.

09 초과(超過) · 미만(未滿)

'초과'와 '미만'은 기준점을 포함하지 않고 그보다 많거나 적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만원 초과이면 1만원은 포함되지 않고 10,001원부터를 의미하고, 1만원 미만이면 1만원은 포함되지 않고 9,999원까지를 의미한다.

10 전(前) · 후(後)

초과나 미만처럼 기준시점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3 전(前)이면 1과 2를 의미하고, 3 후(後)이면 3은 제외하고 4부터를 의미한다.

11 자(者)

법률에서는 일반적으로 누구를 가리킬 때 '자(者)'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자(者)'는 사람과 같은 법률 주체를 가리킨다. 그런데 법률 주체에는 유기적 생명체로서의 사람(= 자연인) 이외에 법인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거래정보사업자'라고 법률에서 표현하였다면 여기에는 사람과 법인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12 준용(準用) · 적용(適用)

'준용'은 본래 a라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A라는 법령의 규정을, a와는 유사하지만 본질상 다른 b라는 사항에 대한 법문에 다소 수식을 가하여 취급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A라는 법령에서 본래 그 법령이 규율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a라는 사항을 다루는 것을 나타내는 '적용'과 구별된다. 즉, '적용'은 특정 사안에 대하여 조문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고, '준용'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리에 따라서 약간의 수식을 가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적용'과 '준용'은 특별한 개념구별 없이 법조문상 반복서술을 막기 위한 입법기술의 하나로 사용되기도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43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3 즉시, 지체 없이

'즉시'는 시간적 즉시성이 '지체 없이'보다 강한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하여 '지체 없이'는 역시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한 또는 합리적인 이유에 기한 지체는 허용된다고 해석된다. 다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4 통지(通知) · 통보(通報) · 통고(通告)

(1) 통지

'통지'는 자기 의사나 어떤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것으로서 사법상 자기의 의사를 나타내는 의사통지와 어떤 사실을 나타내는 관념통지가 있으며, 그 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다는 점에서 의사표시와 다르다. 행정법상으로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하나로서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특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통지는 원칙적으로는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야 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구두로 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법령에 따라서는, 특히 문서에 의한 통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 '통지'를 한 경우의 법률상 발생하는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순히 상대방에게 알린다고 하는 의미뿐이고 그 처분 또는 법률행위의 효과에 직접 영향이 없는 경우(예 「국회법」 제106조[1])도 있고, 상대방에 대한 대항요건인 경우(예 「민법」 제450조[2])도 있다.

(2) 통보

'통보'는 일정한 사실을 알린다는 점에서는 '통지'나 '통고'와 동일하나, '통보'는 사실행위로서 그 알리는 것에 의하여 법률상 효과의 발생이 통상 기대되지 아니하고 또한 의사의 '통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통지'와 다르다.

'통지'와 '통보'를 한자(漢字)로 풀어 구분할 수도 있는데, '통(通)'이란 기별을 보내 소통하도록 하는 의미이고, '지(知)'는 알림을 뜻하며, '보(報)'는 갚는다는 뜻이다. 결국 '통지'는 상대방이 모르는 내용을 기별을 보내 알려 주는 것이고, '통보'는 상대방의 요구나 기대 또는 본인의 의무에 따라 내용을 기별을 보내 보고하는 것이다.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통지와 통보를 구분하기도 하고 혼용하기도 하는 입법례를 볼 수 있는데, 이는 반복서술을 피하기 위한 입법기술 중 하나이다.

1 「국회법」 제106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가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2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9조【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②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 또는 자격정지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통고

'통고'는 일정한 행위 또는 처분을 상대방이 행할 것을 기대하고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에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라는 규정이 그 예이며, 이 '통고'를 받은 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국세청장 등은 고발의 절차를 밟도록 규정되어 있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

15 한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한다' 또는 '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하여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이고, 소속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인 것이 좋은 예이다.

16 혼동(混同)

서로 대립하고 있는 두 개의 법률적 지위나 권리 · 의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한다. 혼동은 물권(「민법」 제191조), 채권(「민법」 제507조)을 통하여 권리소멸의 원인이 된다. 예를 들면 지상권자나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매수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속한 때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혼동에 의한 권리의 소멸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즉,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는 물권 또는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 또는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위의 사례에서 저당권 또는 채권이 타인의 질권의 목적이 되고 있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핵심 혼돈과 혼동

1. 혼돈(混沌/渾沌)
   - 마구 뒤섞여 있어 갈피를 잡을 수 없음. 또는 그런 상태
     예 혼돈에 빠지다. / 외래문화의 무분별한 수입은 가치관의 혼돈을 초래하였다. / 그 나라는 극심한 정치적 혼돈으로 국민 복지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 하늘과 땅이 아직 나누어지기 전의 상태
2. 혼동(混同)
   - 구별하지 못하고 뒤섞어서 생각함
     예 잠이 다 깨지 않았는지 그는 현실과 꿈 사이에서 혼동을 일으켰다.
   -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적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일. 주로 물권과 채권이 소멸되는 원인이 된다.

⇨ 정리하면 상태나 상황, 배경 등은 '혼돈'으로, 그리고 사람의 의식(생각)은 '혼동'으로 생각하면 혼동되지 않을 것이다('혼돈'과 '혼동'을 혼동하지 말자).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17 효력(效力) · 효과(效果)

(1) 의의 및 사용례

① **의의**: 우리말에서 '효력'과 '효과'는 분명 다른 의미와 표기를 가지고 있는 다른 말인데 이를 구분하여 사용하기란 매우 어렵다. 사전적 의미로 접근하여 보면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상 '효력'은 '어떤 사물에 대하여 원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힘' 또는 '법률이나 규칙 따위의 작용'이고, '효과'는 '어떤 목적을 지닌 행위에 의하여 드러나는 보람이나 좋은 결과'이다.

② **사용례**: 양자가 한 문장 안에서 사용된 예를 보면 '효력연장의 효과', '조건성취의 효과로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기한도래의 효과로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등이 있다.

그 밖에 '실종선고의 효과, 취소의 효과, 추인의 효과, 조건성취의 효과, 기한도래의 효과, 혼동의 효과, 해제의 효과' 등과 같은 사용례가 있고, '등기의 효력, 효력발생시기, 대리행위의 효력, 추인의 효력' 등과 같은 법조문상 사용례가 있다.

(2) 구분방법

효력은 '유효 · 무효의 문제'이고, 효과는 '어떤 법률요건으로 인하여 생기는 법률효과'라고 구분하면 된다. 실무상 쉬운 사례를 들어본다. 사채업자에게 소액의 금전을 빌린 채무자가 있는 경우 사채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소비대차약정 자체의 효력은 유효하다. 그러나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사채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사채이자는 무효이며, 따라서 돈을 빌린 채무자 입장에서는 유효인 부분만 상환하면 되는 것이다. 이때 무효인 부분은 갚지 않아도 되는 효과, 반면 유효인 부분은 갚아야 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